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4

발의연월일: 2021. 3. 19.

발 의 자:김영배·진선미·양기대

이병훈 • 기동민 • 양정숙

이동주 · 오영환 · 황운하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온천발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 보전·관리, 온천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리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 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제9조의2에 근거한 온천도시에 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안 제3조의2 개정)
 -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 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함.
 - 2) 온천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
- 나. 온천발전종합계획에 온천도시 사항 포함(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 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천발전종합계획"을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중 "보양온천(保養溫泉)"을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온천도시"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세부 계획"을 "5년 단위의 세부 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연 앵	개 성 안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
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립) ①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는 <u>온천발전종합계획</u> (이하 "종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
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보양온천(保養溫泉)</u> 의 지정과	3.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온천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
4. ~ 6. (생략)	4. ~ 6. (생략)
<u><신 설></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
	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u>③</u>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	
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	
하기 위한 <u>세부 계획</u> 을 수립하	<u>5년</u> 단위의 세부 계획
고 이행하여야 한다.	